##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안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건설교통부 제19935호

ㅁ 공포일자 : 2007. 3. 16

□ 담당부처 : 주거환경팀 (02-2110-8596)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www.moct.go.kr)

#### ⊙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안 제 4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 (1)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 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급수·위생설비 등의 교 체와 병행하여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2) 급수 · 위생설비 등이 설치 후 15년이 경과되면 노후 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 · 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되면 증축을 위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대 상에 감리전문회사 추가(안 제26조제1항제1호)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는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업무의 신고를 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어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음
- (2) 건축사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 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도 300세대 미만의 주 택건설공사 감리의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공개 의무화(안 제56조)

- (1)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 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의적인 운영으로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 (2)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 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 (3)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입주자 등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라.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 6)

- (1) 시설공사별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그 하자 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설정, 하자담보시설공사 항목에 일부 공사항 목 미반영 등으로 입주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 (2)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 변화 등에 따라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시설공사에 추가함
- (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화로 하자분쟁 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등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마.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조정(안 별표 10 및 부칙 제1조 단서)

-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변별력 검증이 미흡한 실정임
- (2) 제1차시험의 민법총칙과 제2차시험의 민법 과목을 제1차시험으로 통합하고, 제2차시험의 주택관리 관계법규 과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추가하며,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에 공동주거관리이론을 추가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3)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 성 향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내용안내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령 : 건설교통부 제550호 □ 공포일자 : 2007, 3, 16

□ 담당부처 : 건설교통부 법무담당실(02-2110-8145)

□ 전문참고: 건설교통부(www.moct.go.kr)

#### ⊙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유발행위에 대해서는 입주자동의서에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 자격자 범위 조정(안 제13조제2항)경쟁을 통한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외에「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원을 감리자격이 있는자에 추가함
- 나.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공사방법 명시(안 제20조제3항) 공동주택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행위허가신청을 위한 입주자 동의를 받을 경우 수선·파손 등 소음유발행위 에 대하여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기재하여 동의 를 받도록 함
- 다. 수선주기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조정(안 별표 5)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선주기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 적으로 조정함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증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 제66호

ㅁ 입법예고기간: 2007, 2.28 ~ 2007, 3, 20

□ 담당부처: 전기용품안전관리팀(02-507-7242~45)

□ 전문참고: 산업자원부(www.mocie.go.kr)

#### ⊙ 개정이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정도에 따라 강제안전인 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차별화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 도」로 개선하고, 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가.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전기용품 안전 인증대상품목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과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신개발제품 등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 지정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신고 한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현행「강제인증대상」으로 유지하되 품목수를 최소화 함
- 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도 강제인증대 상과 동일한 벌칙 적용을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다. 「불법전기용품 대여」의 경우에도 제조·판매와 동일 하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도록 함
- 라.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 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 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 마. 전기용품 제조자와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시험장 비·연구개발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바. 언론·백화점·대형유통업체 등에 불법·불량 전기용 품 유통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정보통신부 제19934호

ㅁ 공포일자 : 2007. 3. 16

□ 담당부처 : 통신방송정책총괄팀(02-750-1313)

□ 전문참고: 정보통신부(www.mic.go.kr)

#### ⊙ 개정이유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의 객관화·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상한을 폐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구체화(안 제12조)
  - (1)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 가 명할 수 있는 각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 회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

도록 하는 등 동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

(3) 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자의 예 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치명령의 불이행을 방지 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 나.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안 제13조제1항, 별표 2, 별표 3)

- (1) 현행은 단순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부과상한 외에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통신위원회의 재량을 통제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2) 전기통신사업자별 과정금 부과상한액의 차등 적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 의 합리적 부과를 위하여 그 산정과정별로 기준금액, 필수적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의 단계별 산정기준을 정하되, 각 단계별 참작사유와 상한을 구체적으로 정함
- (3) 과징금 산정의 객관적이고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아름다운 명언 1

## 덴쓰의 성공 10법칙

- 덴쓰의 성공 10법칙中에서/우에다 마사야 -

덴쓰의 성공 10법칙이란 덴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요시다 히데오(吉田秀雄, 일본의 광고회사 덴쓰(電通)의 4대 사장)의 인생철학이자 사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한 글이다. 또,창조적 정신과 독립심, 지속적이고 강한 행동력, 신념과 자신감,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강조한 글이기도 하다.

1. 일은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 2. 일은 앞서서 추진해나가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 3. 큰일을 잡아라. 작은 일은 자신을 작게 만든다.
- 4. 어려운 일을 노려라. 그것으로 당신은 발전한다.
- 5. 일을 시작하면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 6. 동료를 이끌고 잡아당겨라. 잡아당기는 것과 끌려 다니는 것 은 하늘과 땅 차이다.
- 7. 목표를 세워라. 목적의식이 있는 노력은 다르다.
- 8.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없으면 박력도 끈기도 깊이도 없어진다.
- 9. 두뇌를 항상 풀 회전시켜라. 1분이라도 틈을 만들지 마라.
- 10. 마찰을 두려워 마라. 마찰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문의 | 민원봉사실** 02-2182-0741~3

01

구청 빗물펌프장과 간이 빗물펌프장간의 거리가 200m정도인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2개 소를 선임할 수 있는 지

7

② 귀 구청의 빗물펌프장과 간이 빗물펌프장이 200m 거리에 설치되어 있다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제1호에 해당되어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2개소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5, 3)

## 02

24시간 맞교대(교대자는 자격증이 없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 퇴근 이후 사고발생시 안전에 대한 책임여부는

7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확인·점검 등 전기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근무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상시근무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 8시간이상, 월25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격일근무 또는 교대근무인 경우에도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 경우 안전관리자 공백시안전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인의 지정, 대리자의 직무범위등을 정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12)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고발업무는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해야 하는지

71

②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은 동법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ㆍ해임신고를 위임받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동법 제96조2의제2항에 따라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6, 18)

# 04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기술인력이 전기공사기능사, 방화관리(소방), 기계설비 업무를 겸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동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7)